

연구윤리 강령

서문

이 강령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회원이 연구 및 지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실과 정직성을 전제로 하고, 기술인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회원이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 스스로의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사회적 책임)

- 회원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윤리규정의 개정 및 위반에 대한 심의와 윤리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기본 연구윤리 심의)

- 회원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심의 한다.
- 윤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고 보충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3조(보편성의 원칙)

회원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회원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법령의 준수)

- 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 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조(연구대상의 존중)

과학적 연구대상이 인간인 경우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생명윤리에 부합해야 하며, 동물인 경우 생명의 존엄성에 유의한다.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7조(연구 자료의 기록·보존)

회원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 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8조(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 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제9조(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회원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0조(이행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제11조(연구환경 조성)

회원은 책임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정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제12조(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부 칙

1. 본 강령은 200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강령의 개정안은 200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강령의 개정안은 201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